



한국연구재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3.10. 일부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3.11. 일부개정)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시행령 제20조 및 사용기준 제75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연구개발비 정산 (시행령 제26조 및 사용기준 제80조)	연구개발비 규모와 관계 없이 연구개발과제 정산 실시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 5천만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일부만 정산실시

※ 세부 변경내용 시행령 및 사용기준 전문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관련 참고사항

-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부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26.3.10.)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반납이 원칙임

- 그러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이더라도, 혁신법 시행령 개정('26.3.10.) 이전에 이미 사용(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혁신법 시행령을 적용함

-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개정 시행령('26.3.10.)을 적용하여,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끝.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 전문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신자 : 부설기관,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비영리기관, 그밖의
기관

담당 김수현

팀장 조우현

센터장 03/30
구자필

협조자

수신자 계장대우 이리라

과장대우 유승욱

실장 전결03/31
한연숙

시행 연구정산총괄팀-1187 (2026.03.30.)

접수 산학지원팀-501 (2026.03.31.)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http://www.nrf.re.kr>

전화 042-869-6655

/전송

/ kimsh52@nrf.re.kr

/ 비공개(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3호, 2026. 3.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종전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제투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비의 간편 정산 방식 도입(제26조제3항)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대통령령 제3616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제26조제1항 중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사용용도,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금액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의 부담 시기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